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8월 29일
발 의 자 : 이종환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김춘곤, 박영한,
박칠성, 봉양순, 서호연,
송경택, 이영실, 이효원,
최민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도서관법」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도서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함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 등).
- 나.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수정함(안 제4조).
- 다.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3조~제27조).
- 라.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37조).
- 마.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40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서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2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2조제4호”를 “제4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2조제4호가목”을 “제4조제2항제1호가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2조”를 “제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제2조제2호”를 “제3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2조”를 “제3조”로 하고, “제3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이 중 “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”을 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책무)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”를 “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(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) 법 제24조”를 “(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) 법 제17조”로 하고, “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”을 “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”으로 하며, 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”를 “광역도서관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”을 “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7조 중 “제5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2호 중 “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”을 “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3호 중 “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”을 “전문도서관,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에 따른다.

제13조제1항 “(실무위원회)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를 “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실무위원회의”를 “분과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“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”를 “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실무위원회의”를 “분과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4항제3호 중 “위임한 사항”을 “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실무위원회는”을 “분과위원회는”으로 하고 “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도서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”를 “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실무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제22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제6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”을 “제23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·

자문을”로 한다.

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제23조”를 “제26조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“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”을 “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중 “도서관 업무”를 “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5호 중 “수집 지원”을 “수집 활동 지원”으로 하고, “보존”을 “보존관리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8호 중 “네트워크 시스템 운영”을 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8조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제9조”를 “제47조”로 한다.

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1조로 하며,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)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4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

2.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5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도서관, 교육, 문화 관련 종사자

2.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2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

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에 따른다.

제2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7조를 제33조로 하며 이중 “제44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34조부터 제36조로 한다.

제31조를 제37조로 하며 제2항 중 “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,”를 “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,”로 하고, 제2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·발표 등 학술행사
 2.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
 3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
 4. 백일장, 독후감 경진대회, 도서 교환전, 독서문화 축제,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
 5.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-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,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·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.

제34조를 제40조로 하며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(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)

-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(이재민) 제3호 가목, 나목,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·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
 2.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
 3.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
-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,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제41조부터 제42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서울도서관"이란 「도서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22조</u>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,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과 그 분관을 말한다.</p> <p>2. "공공도서관"이란 법 <u>제2조 제4호</u>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3. "작은도서관"이란 법 <u>제2조 제4호가목</u> 및 「작은도서관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4. 대학·학교·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<u>제2조</u> 각 호 정의를 따른다.</p> <p>5. "도서관자료"란 법 <u>제2조제2호</u>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법 <u>제2조</u>에 따른 도서관과 법 <u>제3조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제4조 제2항제1호</u>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제4조제2항 제1호가목</u>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<u>제4조제2항</u>----- -----.</p> <p>5. -----<u>제3조제2호</u>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 범위) ----- <u>제3조</u>----- -----<u>제9조</u>-----</p>

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(이하 "도서관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7조(기능)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~2. (생략)
3. 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
4.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제8조(구성)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~③ (생략)

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, 서울도서관장,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
2.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

-----광역도서관위원회-----
-----.

제7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

- 1.~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

4. <삭제>

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구성) ① -----

-----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-----

4명

3. 대학도서관, 학교도서관,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

4. (생략)

⑤ (생략)

제10조(회의) ①~③ (생략)

<신설>

제13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2. (생략)

3.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제14조(의견청취) 도서관위원회와

-

3. ----- 전문도서관,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

4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회의) ①~③ (현행과 같음)

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에 따른다.

제13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-----

-----.

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
④ 분과위원회의-----
-----.

1.~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

제14조(의견청취) -----

수 있다.

제18조(업무) ① 서울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

2.~3. (생략)

4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
5.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

6.~7. (생략)

8.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

9.~10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0조(도서관자료의 제출) ① 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,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 2부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~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 ① 서울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

제18조(업무) ① -----

제26조-----

-----.

1. 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

2.~3. (현행과 같음)

4. 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---

5. -----수집 활동 지원

-----보존관리

6.~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
9.~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도서관자료의 제출) ① -

제28조-----

-----.

1.~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 ① -----

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·기부의 의사표명이 있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가 있다.

②~⑤ (생략)

제23조~26조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제47조-----

-----.

②~⑤ (현행과 같음)

제28조~제31조

제23조(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)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4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
2.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5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

서 호선으로 정한다. 다만, 위촉
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
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
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
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
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
있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
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
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
촉한다.

1. 도서관, 교육, 문화 관련 종사자

2.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
있다. 다만, 위원이 사고로 직무
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
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
임명하여야 하며, 보궐위원의
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
로 한다.

<신 설>

제26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
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
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
며,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

<신 설>

<신 설>

제27조(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)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

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에 따른다.

제2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2조(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)

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(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) -----제6조-----

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, 자료제작·구입, 시설개선,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8조~제30조

제31조(지역의 독서문화진흥)

- ① (생략)
- ② 시장은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,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<신설>

-----.

제34조~제36조

제37조(지역의 독서문화진흥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
-----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, -----
-----.

- 1.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·발표 등 학술행사
- 2.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
- 3. 성별, 연령,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
- 4. 백일장, 독후감 경진대회, 도서 교환전, 독서문화 축제,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
- 5.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

제32조~제33조

제34조(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진흥)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<신 설>

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,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·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8조~제39조

제40조(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진흥) -----

-----.

①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(이재민) 제3호 가목, 나목,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·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
2.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

<p><u>제35조 ~ 제36조</u></p> <p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</u></p> <p>3. <u>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 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</u></p> <p><u>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,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41조 ~ 제42조</u></p> <p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--	--

문서번호

20220819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이종환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08.19.

회신일 : 2022.08.2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내지26조의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신규 설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안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범위), 제4조(책무), 제5조(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시행계획의 수립), 제6조(광역도서관 위원회의 설치), 제7조(기능), 제8조(구성), 제10조(회의), 제13조(분과위원회), 제14조(의견청취), 제15조(수당 및 여비), 제17조(설립 등), 제18조(업무), 제20조(도서자료의 제출), 제21조(기부·기증·위탁), 제27조(운영세칙), 제32조(공동도서관의 운영 평가), 제33조(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), 제40조(지식정보취약 계층의 독서문화진흥)의 개정사항은 상위법 조항 인용 및 문구 수정, 기존 위원회 명칭 변경, 기존 규정에 대한 내용 세분화 등의 사항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※ 안 제37조(지역의 독서문화진흥)의 신설 규정은 관련 사업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

◇ 2022년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관련 예산 현황 ◇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세부내용	예산액
합계		513,210
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	사무관리비	3,300
	행사운영비	51,150
지식문화 공유축제	사무관리비	12,000
	행사운영비	202,400
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	사무관리비	19,360
	자치단체경상보조금	225,000

※ 2022년 서울도서관 예산서 참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-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(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), 제24조(기능), 제25조(구성 및 임기), 제26조(회의) 규정에 따른 비용

나. 추계결과

- 총비용(합계) = 69,900천원(연평균 13,900천원)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3	2024	2025	2026	2027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(안 제23조~26조)		13,900	13,900	13,900	13,900	13,900	69,900
	소계(b)		13,900	13,900	13,900	13,900	13,900	69,900
□ 총 비용(b-a)			13,900	13,900	13,900	13,900	13,900	69,900

○ 추계의 전제

- 안 제23조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11명(당연직 위원장1명, 위촉직 위원 10명)으로 구성하고 연6회(분기1회, 수시2회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3~2027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비용 = 69,900천원

- 산출방식 = $\sum_{i=1}^5$ (연간위원회구성·운영비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3~2027)

- 연간 위원회 구성·운영비용 = 13,980천원
 =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업무추진경비
 = (수당단가×지급인원×연6회) + (경비단가×지급인원×연6회)

= (200천원×10명×6회) + (30천원×11명×6회)

= 12,000천원+1,980천원

= 13,98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인원 10명 : 위촉직 위원 10명(당연직 위원장 1명 제외)

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
※ 업무추진경비 지급인원 11명

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) 30천원으로 적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분석관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